

## ◎ 직제 및 정원규정

제정 2007. 4. 10.  
개정 2008. 2. 11.  
개정 2010. 1. 21.  
전부개정 2012. 1. 17.  
개정 2014. 8. 7.  
개정 2017. 7. 24.  
개정 2019. 9. 24.  
개정 2022. 8. 17.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1.>

**제 2 조(적용범위)** 장애인체육회의 직제 및 정원은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조직관리)** ① 사무처의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행한다.

② 회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업무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2 장 조 직

**제 4 조(기구)** ① 본회 사무처의 기구는 1처 3부제로 한다. <개정 2022. 8. 17.>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구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③ 사무처에 두는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제 5 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1인을 두며, 4급 상당으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규약 제4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지휘 통솔하고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8. 17.>

③ 사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관리 및 운영
2. 장애인의 생활체육교실운영
3.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지원

4.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
5.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의 체계적 육성
6.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7.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 및 관리
8. 장애인 체육을 통한 국제 교류협조
9.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 조(부장)** ① 부장은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처장 유고시에는 기획총무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8. 17.>

② <삭제 2022. 8. 17.>

**제 6 조의2(보직기준)** ① 부장은 일반직 5급~6급으로 보한다.

② 과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한다.

③ 대리는 일반직 7급으로 보한다.

④ 주임은 일반직 8급~9급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2. 8. 17.]

## 제 3 장 정 원

**제 7 조(정원)** ① 본회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직급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

**제 8 조(직종)** 사무기구 직원은 임기직, 일반직,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8. 17.>

## 제 4 장 업 무

**제 9 조(업무분장)** 사무처의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10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직무명령)** 이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회장으로부터 직무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8. 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7. 24.)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9. 24.)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 8. 1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팀장이상”을 “부장이상”으로 하고, 제35조 제3항 중 “기획총무 팀장”을 “기획총무부장”으로 한다.

② 직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팀장”을 “부장”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중 “팀원, 팀장”을 “담당, 부장”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팀장, 기획총무팀”을 “부장, 기획총무부”로 한다.

③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별표] 중 “팀장”을 “부장”으로 한다.

④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4조·[별지 제12호 서식]·[별지 제14호 서식]·[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별지 제21호 서식]·[별지 제22호 서식]·[별지 제24호  
서식] 중 “기획 총무팀장”을 “기획총무부장”으로, [별지 제29호 서식] 중 “팀장”을  
“부장”으로 한다.

⑤ 문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기획총무팀”을 “기획총무부”로, 제28조 중 “기획총무팀장”을 “기획총무  
부장”으로 한다.

⑥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총무팀장”을 “기획총무부장”으로 한다.

⑦ 차량운행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중 “팀장”을 “부장”으로 한다.

⑧ 실업팀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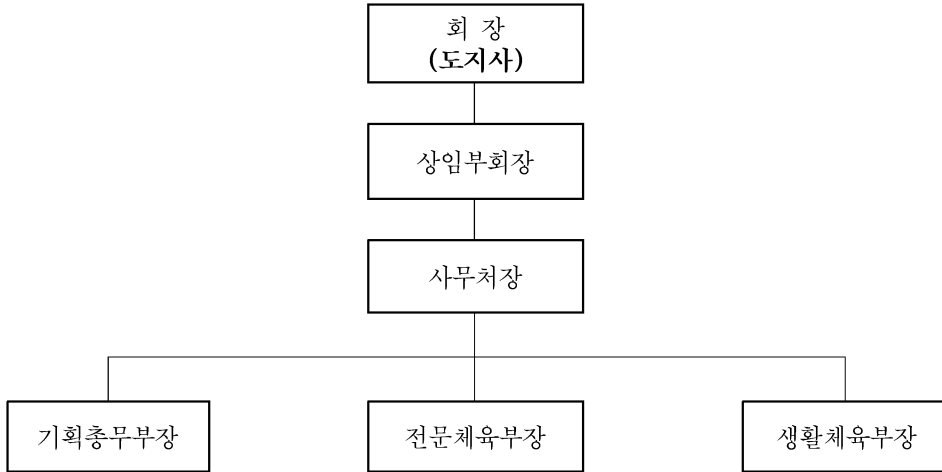
제3조 중 “전문체육팀장, 전문체육팀”을 “전문체육부장, 전문체육부”로 한다.

⑨ 관리단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전문체육팀장”을 “전문체육부장”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2. 1. 17, 2022. 8. 17.>

기구 표



[별표 2] <개정 2010. 1. 21, 2014. 8. 7, 2017. 7. 24, 2019. 9. 24, 2022. 8. 17.>

사무처 정원표

직 급	합 계	임 기 직	일 반 직	무기계약직
합 계	14	1	11	2
4급	1	1		
5급	1		1	
6급	3		3	
7급	2		2	
8급	2		2	
9급	3		3	
-	2			2

[별표 3]

업 무 분 장

구 분	업 무 내 용
기획총무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상북도장애인체육 발전계획 수립</li> <li>2. 규약 및 제 규정의 제·개정</li> <li>3.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운영</li> <li>4. 인사, 근무평정, 감사, 직원 복리후생 및 상훈에 관한 사항</li> <li>5. 예산 편성 및 회계 관리</li> <li>6. 복무, 보수,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li> <li>7. 물품·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li> <li>8. 문서수발·통제 및 보존, 보안업무에 관한사항</li> <li>9. 연금 및 퇴직금, 기금 및 제 보험관리에 관한 사항</li> <li>10. 일반 업무용 차량관리</li> <li>11.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li> <li>12. 홈페이지 관리</li> <li>13. 장애인체육회 홍보 관리</li> <li>14.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무</li> </ol>
전문체육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국장애인체육대회(하계·동계) 및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li> <li>2. 가맹경기단체 승인 및 육성, 지원 및 사후관리</li> <li>3. 선수등록 관리 및 전문체육 육성·지원</li> <li>4. 국제대회 참가 및 국제스포츠 교류</li> <li>5.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li> <li>6. 훈련용기구 지원 및 관리</li> <li>7.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li> <li>8. 경기운영 및 훈련에 관한사항</li> <li>9. 기타 전문체육에 관한 제반 사항</li> </ol>
생활체육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활체육지원 사업 및 사후관리</li> <li>2. 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장애인도민체육대회)개최 및 지원</li> <li>3.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4. 생활체육서비스 지도계획 수립</li> <li>5. 생활체육지도자 인사·채용 및 근무평정</li> <li>6. 생활체육지도자 월간 지도실적 보고</li> <li>7. 생활체육지도자 복무관리 및 지도</li> <li>8. 생활서비스 지도업무용 차량관리</li> <li>9. 기타 생활체육에 관한 제반 사항</li> </ol>